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66

발의연월일: 2025. 2. 26.

발 의 자: 문진석·박정현·이건태

복기왕 • 이정문 • 장종태

박성준 • 박용갑 • 이재관

김문수 · 황명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 에 경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회기 외 시간이나 국회 외부에서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며, 현재 국회 외곽의 질서 유지 등은 행정 부 소속의 서울특별시경찰청 산하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현행 국회경비대는 국회의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으므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 당시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들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에 국회의 출입과 국회 및 그 인근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비대를 두고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및 질서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의 제목 중 "경호권"을 "경호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의장은 국회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국회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제1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4조의2(국회경비대) ① 국회의 출입과 국회 및 그 인근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비대를 둔다.
 - ② 의장은 국회경비대에 필요한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 ③ 국회경비대 소속 공무원 및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 ④ 국회경비대의 장은 의장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의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처벌

한다.

- ⑥ 국회경비대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장비나무기를 소지할 수 있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⑦ 국회경비대의 조직, 업무 지역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3조(의장의 <u>경호권</u>) (생 략)	제143조(의장의 <u>경호권 등</u>)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의장은 국회의 안전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국회 출입을 금
	지할 수 있다.
<u><신 설></u>	제144조의2(국회경비대) ① 국회
	의 출입과 국회 및 그 인근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비대를 둔다.
	② 의장은 국회경비대에 필요
	한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정부
	에 요구할 수 있다.
	③ 국회경비대 소속 공무원 및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
	원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
	를 수행한다.
	④ 국회경비대의 장은 의장이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
	서 임명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파견된 경찰
	공무원이 의장의 직무상 명령
	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법」 제37조제1항 에 따라 처벌한다.

6 국회경비대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장비나 무기를 소지할 수 있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7 국회경비대의 조직, 업무 지역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